

사전감사대상

문서번호	자자 5511 - 47	감 사			
처리기한	1997. .	보존기간	이 사 부총재 총 재		
기 안	1997. 2.	영구			
발 신	1997. . .				
과 장 부 장		원 우 권			
7 정					
기 안 자	정 후 식	합	(법규과)기획부장 60	전결근거	직무권한분류표 제1장 제1절 제1항 제4호
소 속	자금부 자금과				
직 위	조사역 전화 4492				
수 신	제 목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				
참 조					
제 목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는 한편 은행의 자금운용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무역어음의 최장만기일을 현행 180일 이내에서 종합금융회사와 같이 270일 이내로 운용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 임 :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안) 1부. 끝.					
1997. 2. 05 장사실 1997. 2. 05 법규과					
사본수신처 : 한국은행 행내 021-10('89.11.19) () (결재서식)					
업무 연역 기록	필요 불요	공 람	37		

「금융기관여신운용세칙」 개정(안)

현행	개정(안)	비고
제 1 조 ~ 제 5 조 (생략)	제 1 조 ~ 제 5 조 (현행과 같음)	
제 6 조(어음보증 및 인수)① (생략)	제 6 조(어음보증 및 인수)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고 있는 수출 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무역어음 발행업체로 하여금 관련 수출신용장 내도시 이를 제출토록 하고, 동 수출신용장 집수시 이를 수출계약서와 대체하여야 한다. 1.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로서 수출신용장 등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상의 선적기일 또는 물품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2. 액면금액이 수출신용장 등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의 금액(FOB기준)에 인수당일의 대고객전신환매입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서 500만원 이상인 어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취급세칙」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하고 있는 수출 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 등”이라 한다)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환어음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한다)을 인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행된 무역어음을 인수한 경우에는 무역어음 발행업체로 하여금 관련 수출신용장 내도시 이를 제출토록 하고, 동 수출신용장 집수시 이를 수출계약서와 대체하여야 한다. 1.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270일 이내로서 수출신용장 등 또는 수출신용장결제조건부 수출계약서상의 선적기일 또는 물품인도기일에 최장 10일을 가산한 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어음 2. (현행과 같음)	무역어음 최장만기일 연장
제 7 조 ~ 제 8 조 (생략)	제 7 조 ~ 제 8 조 (현행과 같음)	
(신설)	부칙	
	이 세칙은 1997. 2. 15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명시